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4조)
-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5조, 제6조)
- 마. 시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지원(안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